

[별표]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제3조 관련)

1. 차장
2. 처·차장실 안전검토 담당 비서
3. 대변인실 소속 공무원
4. 기획조정관 소속 전시법령 담당 공무원
5. 기획조정관
6.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소속 공무원
7. 법제정책국 소속 공무원
8. 법령정비국 소속 공무원
9. 행정법제국 소속 공무원
10. 경제법제국 소속 공무원
11. 사회문화법제국 소속 공무원
12. 법령해석국 소속 공무원
13. 법제정보지원국 소속 공무원(전산업무 담당 공무원은 제외한다)
14. 법제자문조정관실 소속 공무원
15. 파견 또는 인사교류로 다른 기관에서 법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